

의안번호	2210829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5.8.14.
추계번호	25C32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815억 5,900만원(연평균 1,763억 1,2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70	-	-	-	-	70	14
실태조사(안 제11조)	300	-	-	300	-	600	120
조기진단의 실시 등(안 제14조)	4,072	3,732	3,450	3,213	3,008	17,476	3,495
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 (안 제18조)	154,507	159,606	164,873	170,314	175,934	825,234	165,047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안 제25조)	7,094	7,342	7,600	7,868	8,145	38,049	7,610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안 제28조)	26.2	26.2	26.2	26.2	26.2	131.0	26.2
합 계	166,069	170,706	175,949	181,721	187,113	881,559	176,312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1조(실태조사)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이하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5조(지원신청 등)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8조(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적능력(修學能力)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학습법 개발,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9조(자립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 소개, 공공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1조(자녀양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2조(평생교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교육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23조(의료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 생활 훈련, 심리상담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5조(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센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이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제2항) 시·도지사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제3항)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 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7조(경계선지능인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8조(경계선지능 학생교육운영위원회)	(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 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11조(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4	안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	○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2항) 대구·인천교육청의 진단검사비 지원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5	안 제15조(지원신청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8조(교육 및 활동·돌봄 서비스 지원)	△	○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2항·제3항)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7	안 제19조(자립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	
9	안 제21조(자녀양육 지원)	×	
10	안 제22조(평생교육 지원)	×	
11	안 제23조(의료 지원)	×	
12	안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	○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13	안 제25조(경계선지능인종합 지원센터)	○	
14	안 제27조(경계선지능인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5	안 제28조(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	○	○ 교육부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5조, 제19조~제24조, 제27조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안 제1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¹⁾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마련할 판정체계의 형태와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9조~제24조)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취업 및 고용, 자녀양육, 평생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아동 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25년 예산 기준 8억 3,800만원)
 - (안 제27조)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27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축할 시스템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0 초과 85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IQ의 정규 분포에 따라 인구의 13.59%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제정안이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자 수를 일괄적으로 인구의 13.59%로 설정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므로, 기존 유사사업의 지원 규모 등을 준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신규 사업의 대상자 수를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총 7,000만원(연평균 1,400만원)으로 추계
-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
 -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제6차 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하여 2021년에 교육부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의 연구용역을 추진함
 - 본 추계는 교육부의 사례를 준용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70	-	-	-	-	70	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실태조사(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추계
- 2024년 보건복지부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해당 연구용역의 예산으로 2024년에 3억원이 편성됨

- 2024년에 제정안이 명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3년 후인 2027년부터 3년마다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연구용역 단가(3억원)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11조)	300	-	-	300	-	600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조기진단의 실시 등(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총 174억 7,600만원(연평균 34억 9,500만원)으로 추계
- 대구·인천교육청의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2025년 예산서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추계서는 매년 시·도별 6~11세 인구의 1%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에 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대구·인천교육청의 2025년 지원인원은 지역별 만 6~11세 인구 대비 0.3% 수준
 - 지원 인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12.)를 활용하여 산출
 - 지원 단가는 1인당 2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현재 시행 중인 유사 사업은 제정안에 따른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중단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대상자 수	20,360	18,659	17,250	16,067	15,042	87,378	17,476
지원 단가	0.20	0.20	0.20	0.20	0.20	-	-
합 계	4,072	3,732	3,450	3,213	3,008	17,476	3,4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가정
 - (대상자 수) 2025년 기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11,000명)만큼 추계기간 동안 매년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대상자 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원 단가 및 시간 등) 2025년 기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16,620원)와 지원 시간(66시간), 지원 개월(12개월)를 기준으로 추계
 - 지원 단가는 2023~2025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3.3%)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지원 시간, 지원 개월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8,252억 3,400만원(연평균 1,650억 4,700만원)으로 추계

[표 5]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안 제18조)	154,507	159,606	164,873	170,314	175,934	825,234	165,0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안 제25조)

-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례와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중앙센터 수) 중앙센터는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중앙센터 지원 단가)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예산을 준용
 - － 2023~2025년 예산 증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산출)

[표 6]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478	490	505	2.8
운영비	410	410	410	0.0

주: 2025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최중증 중사자 교육 운영지원비(400백만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역센터 수) 지역센터는 16개 광역 시·도에 지역당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 서울시는 현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에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²⁾
- (지역센터 지원 단가) 2025년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예산(12억 5,800만원³⁾)을 기준으로, 2025년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수에 대한 추정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지원 단가를 산출
 - － 지역별 인구 대비 경계선지능인 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실제 경계선지능인의 지역별 분포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경계선지능인 비율 추정치인 13.59%를 일괄 적용
 - － 시설임차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지역별 임대 여부 및 시설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2)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어 경계선지능인,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방과후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강원도에도 별도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

3) 시설임차료 제외

-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지원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⁴⁾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광역 시·도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단가 추정(2025년)
(단위: 천명, %, 백만원)

구 분	경계선지능인 수 추정치	서울특별시 기준 분포	광역 시·도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추정 (기준금액) 1,258 ¹⁾
서울특별시	1,269	100.0	
부산광역시	440	34.7	436
대구광역시	317	25.0	314
인천광역시	416	32.7	412
광주광역시	197	15.5	195
대전광역시	199	15.7	197
울산광역시	149	11.7	147
세종특별자치시	54	4.3	54
경기도	1,896	149.3	1,879
강원특별자치도	206	16.2	204
충청북도	222	17.5	220
충청남도	303	23.9	300
전북특별자치도	237	18.7	235
전라남도	237	18.7	235
경상북도	351	27.7	348
경상남도	439	34.6	435
제주특별자치도	92	7.2	91

주: 1) 시설임차료 제외

자료: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서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80억 4,900만원(연평균 76억 1,000만원)으로 추계

[표 8]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앙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944	959	974	990	1,006	4,872	974
광역 시·도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제외)	6,150	6,383	6,626	6,878	7,139	33,175	6,635
합 계	7,094	7,342	7,600	7,868	8,145	38,049	7,610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2025.07.14.)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3.8

바.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안 제28조)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시 민간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원 수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준용하여 추계
 -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추계) 해당 위원회에 6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⁵⁾씩 지급하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추계) 광역 시·도별 해당 위원회에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⁶⁾씩 지급하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3,100만원 (연평균 2,620만원)으로 추계

5)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6)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준용

[표 9]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명, 회, 개소)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앙위원회 운영 비용(A)	2.4	2.4	2.4	2.4	2.4	12.0	2.4
회의수당 단가	0.2	0.2	0.2	0.2	0.2	-	-
인원 수	6	6	6	6	6	-	-
회의개최 횟수	2	2	2	2	2	-	-
시·도위원회 운영 비용(B)	23.8	23.8	23.8	23.8	23.8	119.0	23.8
회의수당 단가	0.1	0.1	0.1	0.1	0.1	-	-
인원 수	7	7	7	7	7	-	-
회의개최 횟수	2	2	2	2	2	-	-
시·도 수	17	17	17	17	17	-	-
합 계(A + B)	26.2	26.2	26.2	26.2	26.2	131.0	2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